

2026년도 (재)하남교육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(안)

의안 번호	3178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. . .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2026년 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에 대한 하남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”
 - ※ 「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」 행정안전부 해석기준
 - 출자·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, 출자·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·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,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.

2. 주요내용

- 하남교육재단 출연금 : 1,100,000천원
 - 필 요 성 : 관내 장학금 지원 및 진로·진학교육 업무 추진을 위하여 (재)하남교육재단에 출연하고자 함.
 - 사업내용 :
 -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사업
 - 지역인재 육성 및 체험활동 지원사업
 - 가.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프로그램, 진학컨설팅(진학 상담), 학부모 교육(진학 상담), 대학생 온·오프라인 멘토링 등 진로체험 및 진학 프로그램 지원
 - 나. 캠퍼스투어, 우수기업 탐방 등 현장형 인재 육성 교육 지원

- 하남진로체험지원센터 전담 운영

가. 하남시 관내 46개 초·중·고(고골초 휴교) 진로·진학 사업 총괄 운영

나.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총괄 운영

다.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멘토링 사업 운영

- 청소년 활동 지원

가. 청소년 레알축제, 청소년 정책 제안 컨설팅 등 유관기관 지원

3. 세부내용

□ 출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번	출연대상	출연금액			증감사유	비고
		2026년 본예산	2025년	증감액		
1	하남 교육재단	1,100,000	567,329	532,67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온라인 통합교육 플랫폼 ‘하이런’ 교육콘텐츠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<u>100,000천원 발생</u> - 하남진로체험지원센터 성공적인 운영으로 다양한 진로사업 확대 필요 -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으로 관내 청소년(초중고)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·진학 프로그램, 진로진학정보 등 제공 필요 - 재단 기본재산 <u>예금이자 이율이 현저히 낮아져 약 187,499천원 감소</u>되어 임직원 인건비 및 사업 운영 어려움 - 2025년 <u>출연금 252,671천원 감액</u>되어 다양해지는 진로·진학 사업 운영 요구 반영 어려움 - 2025년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 고갈로 인한 사업비 보전 필요 	

□ 출연대상

- 설립근거

- 「민법」 제32조

- 「하남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○ 일반현황

구 분	합 계	임원	정규직	계약직	파견공무원
정 원	21	17	4	-	-
현 원	21	17	4	-	-

※ 기관현황 : 붙임1 참조

○ 기능 및 주요사업

-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사업
- 지역인재 육성 및 청소년활동 지원사업
- 진로·진학체험 지원사업
- 지역교육발전 연구·개발 지원사업

□ 출연금액 : 1,100,000천원(2025년 567,329천원, 94% 증)

○ 증 감 액 : 532,671천원

○ 증감사유

- 하남교육재단 기본재산의 예금이자 이율이 현저히 낮아져 임직원 인건비 및 사업운영 어려움
- 온라인 통합교육 플랫폼 ‘하이런’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콘텐츠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 필요
- 2025년 출연금 부족으로 늘어나는 진로·진학 사업 요구 충족 어려움
※ 2024년 출연금(820,000천원) 대비 252,671천원 감액
- 변화하는 진로·진학 사업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하남시의 교육 및 청소년 정책,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기반 강화 등

○ 수입예산

(단위:천원)

구분	2025	2026	증감내역	비고
계	1,280,908	1,519,697	238,789	
이자수익	400,599	213,100	△187,499	
출연금수익	567,329	1,100,000	532,671	
기부금수익	73,000	83,000	10,000	
환급금	62,597	62,597	0	법인세 환급금, 사업 활용 불가
임대수익	61,000	61,000	0	임대보증금으로 활용 불가
기타보조금 (공모등)	49,000	0	△49,000	
순세계잉여금	67,383	0	△67,383	

○ 지출예산 (※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름)

(단위:천원)

구분	2025	2026	증감내역	비고
계	1,280,908	1,519,697	238,789	
인건비	307,864	324,000	16,136	
물건비	818,860	1,001,631	182,771	물건비+목적사업비
경상이전	27,587	29,325	1,738	
자본지출	3,000	5,000	2,000	
외부차입	61,000	61,000	0	임대보증금
기타	62,597	98,741	36,144	법인세등+예비비

○ 목적사업 추진기준에 따른 예산

(단위:천원)

분야	사업명	예산			비고
		2025	2026	증감	
계		567,329	1,100,000	532,671	
진로 진학	기업체험(현장형 인재양성)	20,000	20,000	0	
	대학교 캠퍼스 투어	55,000	90,000	35,000	* '25 하남교육재단 이자수익(24 발생분)으로 운영→ 감소분에 대한 출연금 추가 배정 필요
	청소년 전문가 인력풀	0	5,000	5,000	
	진학설계 컨설팅	0	20,000	20,000	
	대학생 멘토링	0	10,000	10,000	
	학부모 교육	0	20,000	20,000	
	온라인 교육지원사업	0	100,000	100,000	
	진로체험지원센터	22,329	166,000	143,671	진로체험 수요 충족·확대
	창업가 정신 생태계 조성	0	10,000	10,000	
미래교육	미래교육프로그램	0	5,000	5,000	이자수익 감소분의 재정적 협조 필요
	청소년 기관 협력	0	10,000	10,000	
장학사업	장학금 지원	242,000	254,000	12,000	매년 5% 증액
기관운영	인건비	228,000	324,000	96,000	인건비 상승
	물건비(공공운영비 등)	0	66,000	66,000	이자수익 감소분 지원

- 사업수익 악화(예금이자 이율 감소)로 인한 목적사업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의 충당을 위한 181,000천원 증액
- 온라인 통합교육 플랫폼 ‘하이런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100,000천원 증액
- 그 외 장학금 12,000천원 지원 확대, 진로·진학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용 143,671천원, 인건비 96,000천원 증액 필요

□ 출연근거

- 재단법인 하남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

□ 필요성 및 기대효과

- 장학사업, 청소년 체험, 진로, 진학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사업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발굴 및 운영
- 하남시진로체험지원센터 전담운영으로 46개 초·중·고 진로체험 총괄 운영
- 관내 청소년 진로·진학 등에 대한 학부모 관심과 수요 지속적 증가
- 캠퍼스 투어, 우수기업 방문 등 청소년 교육·보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육성 역할 기대
- 하남시 內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·진학 교육사업 운영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허브 구축
- 취약계층 청소년 멘토링 사업 등 다양한 교육사업 발굴 및 운영
- 선도적인 교육사업 운영을 통한 하남시 인지도 고양

□ 검토의견

- 변화하는 미래교육 환경에 맞춰 하남형 통합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진로·진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통해 관내 청소년, 학부모 등 누구나 만족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종합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하남시 인지도를 높이고, 시민들의 교육 질을 높이하고자 청소년 교육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재원을 출연·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- 붙임 1. (재)하남교육재단 기관현황 1부.
2. 관련법령 발췌 1부. 끝.

붙임 1

(재)하남교육재단 기관현황

소재지	(12966)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228번길 5, 2층																				
설립근거	법 률 :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조 례 : 하남시 하남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대표전화	일반 : 031) 792-1661														설립주체	하남시			
			FAX : 031) 792-1662																		
			URL www.hedu.or.kr																		
연혁	2006.04.14. 장학재단 설립인가 2006.04.19. 설립등기일 2020.09.10. (재)하남교육재단 명칭변경 ※ 지정·고시일 : 2021.01.29.																				
인원현황	구분	계	임원	직 원														비정규직			
				일반정규직							상용정규직										
				소계	행정	기술	전문계약	별정	기능	기타	소계	청경	무기계약	기타	소계	기간제	단시간	기타			
정원	5	1	4	4										0							
현원	5	1	4	4																	
임원 (기관장 및 임원) (‘25.07.31.)	직책 (직책명)	성명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									연락처 (법령상 임기)							
	비상임이사장 (당연직)	이 현 재	하남시장											‘22.08.04~’26.06.30							
	비상임이사 (당연직)	최 철 규	하남도시공사 사장											‘22.12.12~’26.12.11							
	상임이사	김 진 영	전) 하남시 비서실장											‘23.03.22~’27.03.21							
	비상임이사	이 선	전) 하남시의회의장											‘24.06.19~’28.06.18							
	"	정 순 희	국제청소년문화원장											‘24.06.19~’28.06.18							
	"	백 남 흥	을지전기 대표											‘24.06.19~’28.06.18							
	"	이 정 하	EBS 언어강사											‘24.06.19~’28.06.18							
	"	한 상 영	한영기업 대표											‘22.04.14~’26.04.13							
	"	이 영 환	영민섬유 대표											‘22.04.14~’26.04.13							
	"	양 계 영	하남스타필드 점장											‘23.03.22~’27.03.21							
	"	조 광 희	하남시시민참여혁신위원회 교육분과위원장											‘23.03.22~’27.03.21							
	"	이 성 한	나래에너지서비스 본부장											‘23.03.22~’27.03.21							
	"	안 세 진	위례마을교육공동체 회장											‘22.04.14~’26.04.13							
	"	김 현 경	하남시평생학습마을 연합회장											‘24.06.19~’28.06.18							
	"	김 지 연	전) 현현교육 강사											‘23.03.22~’27.03.21							
	비상임감사	임 유 기	하남세무회계법인 대표											‘25.06.30~’27.06.29							
비상임감사	박 희 정	법무법인 원스 변호사											‘24.06.19~’26.06.18								

주요기능	○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사업 ○ 지역인재 육성 및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 ○ 평생학습 및 지역교육발전 연구·개발 지원사업								
	자본금(백만원)	설립	950			납입	-		
'25.12.31기준	수권	-			증자상황	8,309			
재무상태(백만원)	자 산			부 채			자 본		
	계	유동자산	비유동자산	계	유동부채	비유동부채	계	자본금	잉여금등
	10,101	8,846	1,255	74	13	61	10,027	10,027	0

관계법령 발취

□ 「하남시 하남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설립) 재단은 「민법」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 <개정 2020.11.27.>

제5조(재산의 조성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100억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개정 2017.06.08., 2020.11.27.>

1. 하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출연금
2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20.11.27.>

1. 시의 출연금 <신설 2019.3.4.>
2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<신설 2019.3.4.>
3. 제1항의 기본재산 운영과 관련한 이자 수익금 <개정 2019.3.4.>
4. 재단의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<개정 2019.3.4.>

제16조(출연 등) 시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장학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1.27.>